

감정평가서

건명	순화주택건설주식회사 외 1명 소유물건(2022타경2468)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이소영
감정서번호	302022-0613-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아주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송지훈

송지훈

지



(주)아주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지사장 송지훈

감정평가액	사천만원정 (₩40,000,0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이소영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순화주택건설주식회사 외 1명 (2022타경2468)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2.06.16	2022.06.16	2022.06.17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오피스텔	1개호	오피스텔	1개호	-	40,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40,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i>조보리</i>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195-5	300-2 순화 씨저스 팰리스 오피스텔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12층			40,000,000	공용면적 : 13.3249㎡
					1층	168.15		
					2~9층	478.93		
					10층	450.85		
					11~12층	375.97		
	지하	259.57						
	"	300-2	대		944.8			
	오피스텔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29.64	29.64		
			9층 1001호		7.432			
			1. 소유권대지권		944.8x-----	7.432		
				944.8				
			[토지, 건물 토 지: 건 물:]	배분내역]				
				12,000,000				
				28,000,000				
	합 계					₩40,000,000.-		
			이	하	여	백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에 소재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감정평가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 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가격조사완료일인 2022년 06월 16일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의 실지조사는 2022년 06월 16일에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시 공부상 면적, 이용 상황과 현황의 일치여부 및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 평가에 인용 또는 참고한 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부 지번에 ** 처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② 본건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인하여 내부 확인이 불가하여 당해 단지내 동류형 공동주택의 통상적인 가격수준을 기준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 입찰전 내부 이용상황 및 관리 상태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II.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규정

1) 감정평가방법의 관련 규정

관련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제7조	대상물건별로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괄, 구분 또는 부분 감정평가 가능함.
제11조	감정평가는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에 따라 평가함.
제12조	본건은 주거용 구분소유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제16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동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함.

2) 세부 감정평가방법

평가방법	세부 내용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 ① 대상물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해 개별로 감정평가 함.

- ② 본건은 구분소유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본건은 아파트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III. 대상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 대상물건

1) 대상 물건의 개요

일련 번호	소재지 (진주시)	동/층/호	전유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대지권	비고
1	평거동 300-2	-/9/1001	29.64	13.3249	42.9649	7.432	-

2) 감정평가요항표

항 목		내 용
입 지 조 건	위 치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소재 10호광장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함.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주위환경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토 지 상 황	형상, 지세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임.
	접면도로 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차량 진출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사항 등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평거3)),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 물 상 황	구 조	1.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2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이용상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냉난방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기타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 타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 타	없음.

IV.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가격자료

기호	구분	소재지	전유면적	거래금액 /평가금액	전유단가 (원/㎡)	거래(평가)시점 사용승인
①	매매	진주시 평거동 300-10 순화로지스팰리스 오피스텔 70*호	29.7	40,000,000	1,346,801	2021.12.21
						2008.04.10
②	경매	진주시 평거동 300-2 순환 씨저스팰리스 오피스텔 120*호	33.54	45,000,000	1,341,682	2021.11.15
						2006.03.14

2. 사례의 선정

비교적 최근에 거래되고 본건과 제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①>을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3.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므로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1.00)

4. 시점수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권장지수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결정함.

시점수정치
아파트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21.12.21~22.06.16)
거래시점 : 2021.12.21, 2021년11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2.06.16, 2022년05월 지수를 적용 함
2021.12.21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1년11월) : 101.9
2022.06.16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2년05월) : 104.5
시점수정치 : $104.5/101.9=1.02552$

※ 미발표된 월의 매매가격지수는 발표된 매매가격지수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함.

5.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6. 가치형성요인 비교

요인	세부항목	격차율	비 고
단지 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1.00	대체로 유사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 내부 요인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1.00	대체로 유사함.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시공업체의 브랜드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내부 평면방식(베이)	1.00	대체로 유사함.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체로 유사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000	-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

본 건 기 호	비교사례 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전유 면적(㎡)	산정가액(원)	적용가액(원)
1	1,346,801	1.00	1.02552	1.000	1,381,171	29.64	40,937,908	40,000,000
합계		-	-	-	-	-	-	40,000,000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기호	동/층/호수	전유면적(m ²)	감정평가액(원)	전유면적당 단가 (원/m ²)
1	제9층 제1001호	29.64	40,000,000	1,349,528
합 계			40,00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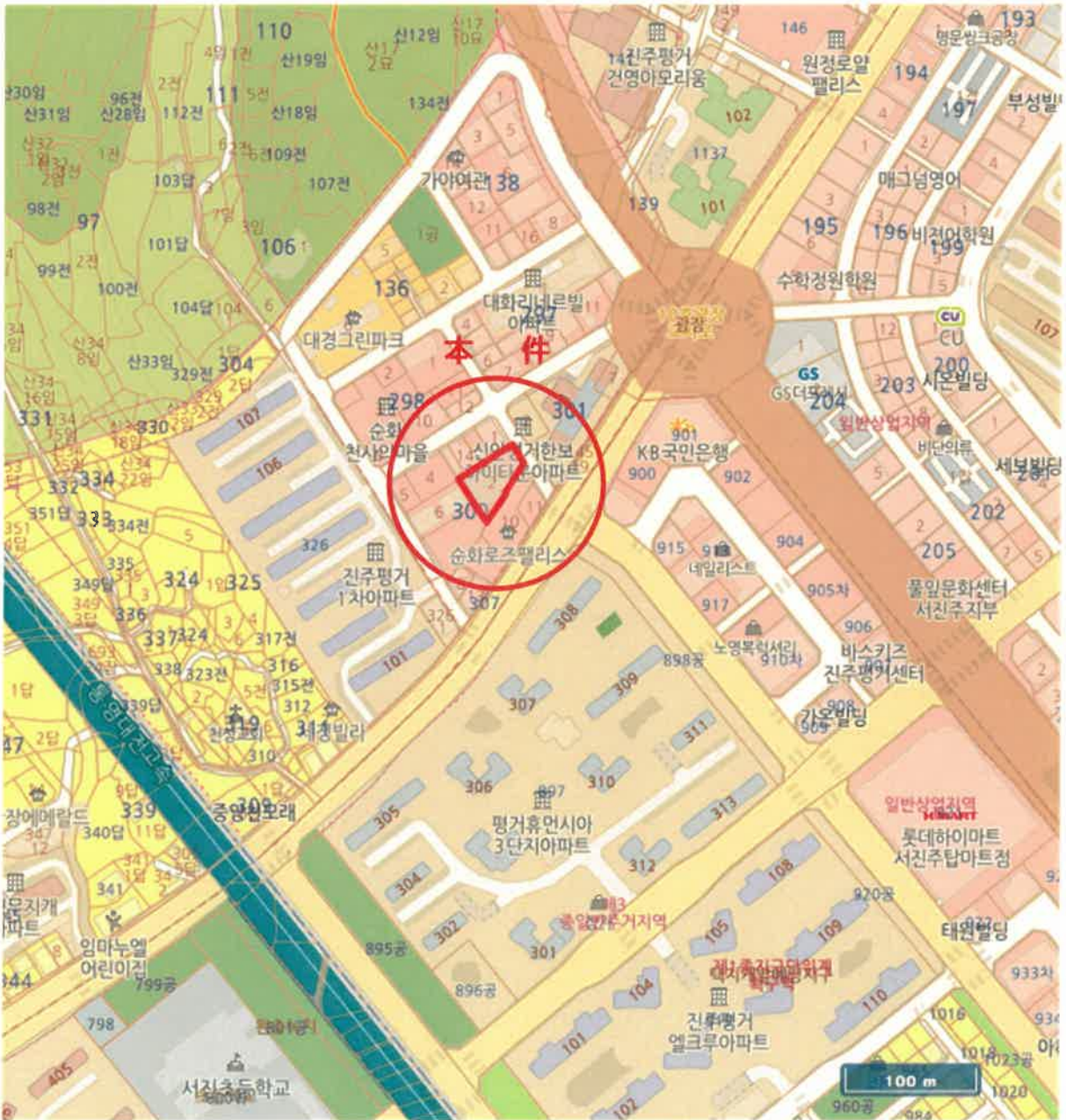
2. 결정의견

본건은 오피스텔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다른 감정평가방법(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위 치 도



소재지 **진주시 평거동 300-2번지**
[순화 씨저스팰리스오피스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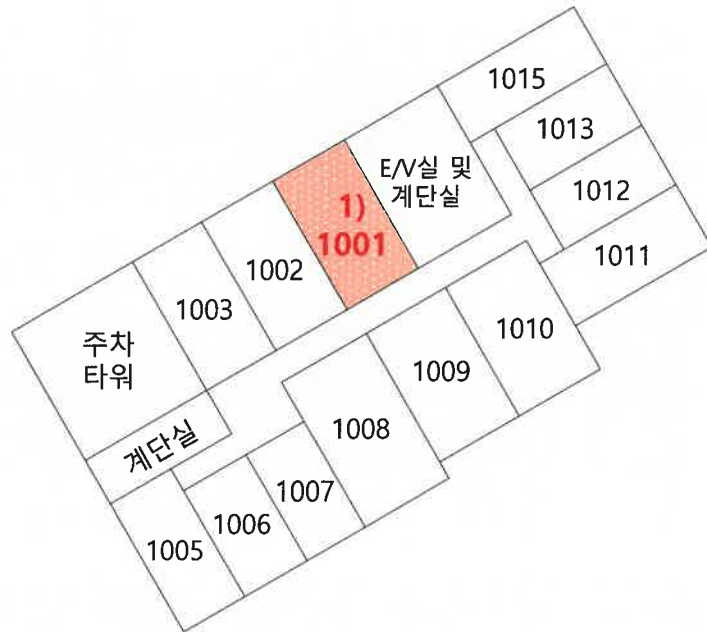


호별 배치도



Non-Scale

소재지 **진주시 평거동 300-2번지**
[순화 씨저스팰리스오피스텔]



본 건
순화 씨저스팰리스오피스텔
제9층 제1001호(기호(1))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호